

# 장수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주택 분양 공고

팔공산 기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 조성된 장수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잔여세대 분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의 명칭 :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
2. 위치 :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학로 93번지 일원
3. 사업 시행자 : 장수군
4. 총 사업량 : 75세대(단독주택 신축)

금회 주택분양 : 2세대

(단위: m<sup>2</sup>, 원)

| 순번 | 대지면적  | 건축면적  | 호수 | 분양금액        | 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정 및 계약 방법               | 입주 예정일 |
|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 | 380.4 | 86.5  | 10 | 135,387,650 | 2019. 10. 29<br>~ 2017. 11. 1 | 서류심사 후 공개추첨을<br>통한 분양 계약 | 계약즉시   |
| 2  | 408.6 | 89.47 | 18 | 134,373,36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※ 분양 신청자는 신청시 희망 주택 번호를 지정하며, 서류 심사 후 공개 추첨을 통한 주택 분양 계약

※ 분양 가격은 내부마감재 설치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.

※ 신청접수(계약시간) :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(09:00 ~ 18:00)

## 5. 분양 금액의 납부

| 구 분  | 계약금      | 잔 금          | 비 고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금 액  | 분양가의 10% | 분양가의 잔금(90%) |     |
| 납부시기 | 계약체결 시   | 입주일 이전       |     |

## 6. 분양 신청 및 계약 장소

- 장수군농업기술센터 :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5 2층 농촌지원과 전문교육팀 ☎ 063) 350-2831

## 7. 분양 조건

- 가. 입주대상자는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한다.
- 나. 입주대상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해제한다.
- 다. 분양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시행자(장수군수)가 환매할 수 있으며, 환매특약등기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.

## 8. 분양신청자격

### 【기본자격】

- 가.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귀농인 또는 장수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한다.

- 나. 입주신청 당시 연령이 입주자 최초공고일 기준 만25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로 한다.

### 【세부자격】: 기본자격을 갖추고 다음 세부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함.

- 가. 장수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자녀

- 나. 장수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자

- 다.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(경영규모, 연령조건 예외)

- 라. 장수 지역 거주 농어업인

- 마. 장수 지역 농수산물 가공·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(경영규모조건 예외)

## 9. 분양 대상자 선정방법

- 가. 서류심사 후 세대별 공개추첨을 통하여 분양 계약을 한다.

- 나. 주택의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선정기준을 별도 지정 할 수 있다.

## 10. 주택의 호수 결정 : 신청자 지정에 의해 결정한다.

## 11. 분양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·분양대금의 반환 : 관련법령 및 계약서 참고

## 12. 입주시기 : 계약 즉시

### 13. 분양 신청 및 계약시 제출서류

- 가. 입주 신청서 제출시 : (1) 입주신청서 1부 (2) 주민등록등본 1부 (분양모집 공고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)  
(3) 인감증명서(반드시 본인발급) 1통 (4) 신분증, 인감도장  
(5) 입주심사에 필요한 기본서류(자기소개서, 영농계획서 등)

나. 제3자 위임시 [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직계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]

- (1)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(2) 신청자의 인감도장 (3) 대리인의 신분증 (4) 위임장

\* 신청서식, 기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### 14.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
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별도 지정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.

### 15. 유의사항

- 선정 및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.
- 계약체결 후 입주예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함(총 주택가격의 10%)
-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분양주택은 지방세법 제20조,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되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잔금 완납 후 등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(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)등의 절차를 자진 이행해야 하며,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, 분양가격은 이전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,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.
- 주택별 배치구조 및 동·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, 조망권,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 할 수 없음.
-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-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(전 재정경제부) “소비자분쟁해결기준” 고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.
-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.
- 선정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장수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(전화통보 불가).
- 입주신청 및 가격, 추첨,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, 입주예정일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 게시·비치되어 있는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분양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공고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(뉴타운조성사업)-농어촌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 가이드라인, 송학골지구 농어촌뉴타운입주자모집 및 분양계획서 등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.
- 문의처 : 장수군농업기술센터 ☎063)350-2831

2019. 10. 18.

장 수 군 수

